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30일,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덕흠 의원)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1.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방안 강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u>장애인의</u> 스포츠관람	제18조의3(<u>장애인 등의</u> 스포츠관

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생략)	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신 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다.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현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노인층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몇 초 또는 몇 분 내로 매진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스포츠 관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최근 부천FC(부천종합운동장)가 홈 경기 가변석 일부를 현장 매표소 구매 전용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티켓 예매 교육을 진행하며, 롯데 자이언츠(사직구장)가 현장 매표소(3루 매표소) 구매 전용으로 배정된 좌석 입장권을 판매(만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하는 등 개별 구단·경기장이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스포츠경기단체 등이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8조의3 제목과 관련하여, 조제목이 신설되는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제목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안 제18조의3제1항(현행법 제18조의3 제목 외 본문)¹⁾의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제1항에서도 ‘장애인’을 ‘장애인, 노인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1) 안 제18조의3(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보임.

- 셋째, 안 제18조의3제2항의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와 관련하여, 대상을 ‘프로스포츠’로 한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스포츠’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안 제18조의3제1항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에도 ‘노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② 안 제18조의3제2항의 세부사항은 프로스포츠 종목별 특성, 구단별 운영 규모, 시설 인프라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

2)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8조의3(<u>장애인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u>장애인</u> 의 스포츠관람권(<u>장애인이 장애인</u> 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u>장애인 등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8조의3(<u>장애인, 노인 등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 ----- 장애인, 노인 등의 -----(<u>장애인, 노인 등이 장애인, 노인 등이 아닌</u> -----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한국야구위원회 등 관련단체는 구단이 자율적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³⁾.

○ 참고로,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46)	박덕흠의원, 2025. 4. 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70)	임오경의원, 2025. 4. 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8조의3제1항) ○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5)	김재원의의원, 2025. 5. 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장애인·노인)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해 전용 관람권 배정, 할인 등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3) < 관련 단체 의견 >

- 한국야구위원회: 장애인의 관람 예매는 전용 콜센터 매뉴얼 고도화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약자는 일본의 사례처럼 지자체 주관으로 디지털 사용법 교육기회 및 현장 판매 확대가 바람직함
- 한국프로축구연맹: 디지털 취약계층에 별도 좌석 배정 시 미판매 분에 대한 매출 피해 발생 가능, 민간 프로스포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철도, 항공, 콘서트 등 타 업종에도 현장판매 좌석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구단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프로농구연맹: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구단 등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